

선거운동원 등의 표지

신 분 명 (선거)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[인] 주 의 사 항 1. 이 표지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. 2. 이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	12.5cm 9.5cm
--	--

- 주: 1. “신분명”은 선거운동원·활동보조인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.
2. 이 표지는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, 선거별·신분별로 구분하도록 색·상·모양 또는 크기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.
3.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표지를 일괄 제작하는 경우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 발급자의 명의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적을 수 있습니다.